IMO 제84차 해사안전위원회(MSC) 참석결과 보고

I. 일반사항

○ 회 의 명 : 제84차 해사안전위원회(The 84th Session of Marine Safety Committee)
○ 기간/장소 : 2008. 5. 7 ~ 5. 16 (10일) / 영국 런던 IMO 본부
○ 참 석 자 : 안전기획팀 선임검사원 최기중

II. 의제목차

1) 의제의 채택
2) IMO 타 기구의 결정 사항
3) 강제협약에 대한 개정안의 검토 및 채택
4) 해상보안강화를 위한 조치
5) 목표기반(Goal-based) 신조선 건조 기준
6) LRIT 관련 사항
7) 항해 안전 전문위원회 결과
8) 위험물, 고체화물 및 컨테이너 전문위원회 결과
9) 방화 전문위원회 결과
10) 산적액체 및 가스 전문위원회 결과
11) 선박설계 및 의장 전문위원회 결과
12) 선원훈련 및 당직 전문위원회 결과
13) 일반화물선의 안전
14) 협약 제 · 개정의 이행을 위한 역량 개발
15) 인적요인의 역할
16) 공식 안전성 평가 (FSA)
17) 선박에 대한 해적 및 무장 강도 행위
18) 해상안전 및 보안에 관한 기술지원 하위 프로그램
19) 협약의 이행 및 관련사항
20) 타 기구와의 관계
21) 위원회 지침의 적용
22) 작업 계획
23) 기타 사항
24) 제84차 위원회 보고서의 검토

III. 의제별 논의경과 및 회의결과

의제 2	IMO 타 기구의 결정 사항

○ 제93차 법률위원회(LEG 93), 제24차 특별이사회(Council Extraordinary Session), 제25차 총회(Assembly) 및 제57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주목하였으며,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음
- 제25차 총회에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기구의 새로운 전략계획" 및 "2008~2009 High Level Action Plan"이 채택된 것을 주목함
- "선박 재활용" 협약 외교회의 개최 사안 및 대기오염 관련 할론 사용 억제에 대한 회람 승인 등과 같은 제57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57) 결정사항을 주목함

의제 3	강제협약에 대한 개정안의 검토 및 채택

[1974 SOLAS 협약 제 · 개정 사항의 채택]

□ **주요 결정사항**

(1) 1974 SOLAS 제 · 개정(Res. MSC.....(84))

1974 SOLAS 체약국 1/3 이상이 참석한 확대 해사안전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SOLAS 협약 제 · 개정사항을 채택함

○ SOLAS 협약 II-1장 3-4 규칙(비상 예인 장치 및 절차) 개정

- 기존 SOLAS 협약 II-1장 3-4 규칙의 총톤수 20,000톤 이상의 모든 유조선에 대한 비상 예인 장치 설치 강제화 규정에 추가하여, 모든 선박에 비상 예인 절차를 비치토록 함

○ SOLAS 협약 II-1장 3-9 규칙(승하선 수단(현측사다리) 관련 요건) 제정

○ SOLAS 협약 II-2장 10.4 규칙(소화 설비) 개정

- 현존선에 대해 1992년 SOLAS 개정(Res. MSC.27(61))에서 요구된 기관 구역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작동을 위한 두 개의 독립된 제어장치 설치를 위한 SOLAS II-2/10.4.1.5 규칙을 신설하였음

○ SOLAS 협약 II-2장 19.4 규칙(위험물의 운송) 개정

- IMDG 코드 강제화 따라 관련 협약사항이 개정되었으나, SOLAS II-2/19.4 규칙은 개정되지 못하였음. 따라서 SOLAS II-2/19.4를 개정(무효화된 SOLAS 참조 규정 삭제)함

○ SOLAS 협약 II-2장 20 규칙(차량, 특수분류 구역 및 로로 구역의 보호) 개정

- 소방수의 배수(Drainage) 및 배출(Pumping) 관련 주관청에서 인정하는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SOALS II-2/20. 6.1.4 규칙 개정 및 전 선종에 대하여 배수구멍(Scupper)이 막히지 않도록 그물망을 설치토록 하는 II-2/20.6.1.5 규칙 제정

○ SOLAS 협약 III장 6 규칙(통신), 26 규칙(로로 여객선의 추가 요건) 및 IV장 7 규칙(무선 설비) 개정

- AIS 기술을 기반으로 한 수색 및 구조 신호 발신 장치(AIS-SART)를 사용할 수 있도록 SOALS III/6.2.2, III/26.2.5 및 IV/7.1.3 규칙 개정

○ SOLAS 협약 Appendix (증서 양식) 개정

- AIS 기술을 기반으로 한 수색 및 구조 신호 발신 장치(AIS-SART)를 사용 관련 SOALS 개정에 따른 핵추진 선박을 포함한 여객선 증서 및 화물선 증서 개정

(2) 1974 SOLAS 협약 제 · 개정(Res. MSC.....(84))

미국의 요청에 따라 "해양사고 조사 코드" 강제화를 위한 SOLAS 협약은 상기사항과 별도로 독립된 결의서(Res. MSC....(84))에 의해 채택되었음

○ SOLAS 협약 XI-1장 6 규칙(해양사고 조사에 관한 추가 요건) 제정

- 해양사고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한 "해양사고 조사 코드" 강제화를 위한 SOLAS 협약 제정

[1988 SOLAS 협약 의정서 개정 사항의 채택]

☐ **관련문서**

○ MSC 84/3/1(사무국): 1988 SOLAS 협약 의정서의 개정

☐ **주요 결정사항**

(1) 1988 SOLAS 협약 의정서 Appendix 개정(Res. MSC.xxx(84))

1974 SOLAS 체약국 1/3 이상이 참석한 확대 해사안전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SOLAS 협약 의정서 개정사항을 채택함

○ 1988 SOLAS 협약 의정서 (부록 - 증서 양식) 개정

- AIS 기술을 기반으로 한 수색 및 구조 신호 발신 장치(AIS-SART)를 사용 관련 SOALS 개정에 따른 여객선 증서 및 화물선 증서 개정

[HSC 코드 개정 사항의 채택]

☐ **관련문서**

○ MSC 84/3(사무국): 1974 SOLAS 협약 및 1994, 2000 HSC 코드, 결의서 A.744(18)의 개정

☐ **주요 결정사항**

(1) 1994 HSC 코드 개정(Res. MSC.xxx(84))

AIS 기술을 기반으로 한 수색 및 구조 신호 발신 장치(AIS-SART)를 사용할 수 있도록 1994 HSC 코드 8.2(통신) 및 14.7(무선 통신) 규칙 개정

⑵ 2000 HSC 코드 개정(Res. MSC.xxx(84))
AIS 기술을 기반으로 한 수색 및 구조 신호 발신 장치(AIS-SART)를 사용할 수 있도록 2000 HSC 코드 8.2(통신) 및 14.7(무선 통신) 규칙 개정

[해양사고의 안전한 조사를 위한 국제 기준 및 조사 방법에 관한 코드(해양사고조사 코드)의 채택]

□ **관련문서**

○ MSC 84/3/4(사무국) : 해양사고의 안전한 조사를 위한 국제 기준 및 조사 방법에 관한 코드(해양사고조사 코드)의 채택

□ **주요 결정사항**

⑴ 해양사고조사 코드의 채택(Res. MSC. xxx(84))
코드는 코드의 목적 및 적용에 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 Part I, 사고조사 권한, 요건, 조사 국가간의 관계 및 협력사항, 사고조사보고서 등과 같은 사항을 규정한 Part II 및 조사 방법을 기술한 Part III로 구성되어 있음

[화물선 및 유조선의 검사 강화에 대한 지침(ESP 지침, 결의서 A.744(18)) 개정]

□ **주요 결정사항**

⑴ 결의서 A.744(18)의 개정(Res. MSC. xxx(84))
IACS에서 제안한 검사의 원활한 준비 및 이행을 도와줄 본선 대표자의 "검사 시작 전 사전 회의 참석자"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영하여, 이중 선측 산적화물선을 위한 검사 강화 지침을 채택함

[SOLAS 개정사항의 채택과 관련된 MSC 회람(Circ.)의 승인]

□ **주요 결정사항**

⑴ 승하선 사다리 및 갱웨이(Gangway)의 건조, 유지 및 검사에 관한 지침

○ '승하선 사다리 및 갱웨이(Gangway)의 건조, 유지 및 검사에 관한 지침'에 대하여 시험하중 등 몇가지 기술적인 사항을 명확히 하도록 제안(MSC 84/3/6)한 사항에 대하여, 네덜란드, 바하마, 터키, 우크라이나, 그리스, 영국 및 ICS 등에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고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지 못하였음. 이러한 본회의장에서의 기술적인 논의에 대하여 DE 의장은 차기 DE 회의에서 상세 검토 후, 지침의 승인을 다시 고려하도록 제안하였음

○ 위원회는 DE 의장의 제안을 수용하고, 차기에 다시 지침의 승인에 대한 사항을 고려하기로 결정하였음

⑵ 비상 예인 절차 마련을 위한 선주/운항자에 대한 지침

○ "SOLAS 협약 II-1장 3-4 규칙"의 적용을 위한 비상 예인 절차 작성을 위한 지침을 승인하였음

[MSC 83에서 채택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련 SOALS 개정" 문구의 수정]

□ **주요 결정사항**

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련 SOALS 개정" 문구의 수정

○ 본 수정 사항은 비엔나 협약에 따라 협약 채택 절차에서 회원국 모두(Unanimously)의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한 사항이었으나, 몇몇 회원국의 반대로 인하여 작업이 진행되지 못하였음

○ 반대의 의견 제시과정에서 SOLAS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MARPOL Annex I 화물류(아스팔트 용액, 기름, 증류유, 경유, 가솔린, 가솔린 혼합 제품, 제트 연료, 나프타) 및 또는 선박 연료유 모두에 포함되는지 기술적인 문제가 제기되었음

○ 따라서 동 사항은 MSC 85에서 추가의 구체적인 논의 후, 결정하기로 하였음

의제 4	해상보안강화를 위한 조치

[MSC/Circ.1097의 개정 제안]

☐ **주요 결정사항**

○ 몰타, 슬로베니아, 그리스, 싱가폴 및 스페인 등 여러 회원국에서 관련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및 논의 필요성을 제안하였으며, 의장은 동 사항을 MSC 85에 구성 예정인 관련 작업반에서 검토하기로 결정하였음

[항만 시설 보안 심사]

☐ **관련문서**

☐ **주요 결정사항**

○ 일본, 브라질, 호주, 미국 및 인도 등에서 캐나다의 제안대로 통신작업반(CG)을 구성하여 동 사항을 논의하는데 찬성하였으나, 슬로베니아, 파나마, 독일 및 멕시코 등에서 CG 구성에 반대하였음

○ 의장은 CG 구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나, 캐나다의 제안에 대하여 일반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모두 동의하므로 MSC 85에 구성 예정인 관련 작업반에서 추가 검토하기로 하였음. 또한 관련 사항에 대하여 회원국의 의견을 요청하였음

[해상 보안에 관한 표준 법률 개발]

☐ **주요 결정사항**

○ 싱가폴 등에서 관련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필요성을 제안하였으며, 의장은 동 사항을 MSC 85에 구성 예정인 관련 작업반에서 추가 검토하기로 하였음. 또한 관련사항에 대하여 회원국의 의견을 요청하였음

[터키에서의 보안 관련 추가 조치 사항]

☐ **주요 결정사항**

○ 싱가폴에서는 터키에서의 보안 증진 사례와 같은 사항을 말라카 해협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도네시아, 싱가폴 및 말레이시아에서 현재 시스템에 대해 시험 적용을 하고 있는 중이라 밝히며 시스템 적용과 관련한 사항을 차후 MSC에 제출할 것이라 하였음

○ 의장은 터키에서의 보고사항에 대해 주목하기로 하였으며, 싱가폴에서의 관련 제출 사항을 기다리기로 하였음

[기타 사항]

☐ **주요 결정사항**

○ 의장은 사무국 및 ISO에서 제공된 관련 정보에 대하여 주목하기로 결정하였음

의제 5	목표기반(Goal-based) 신조선 건조 기준

[Tier III 검증절차의 시험적용]

☐ **주요 결정사항**

○ Tier III 검증절차의 시험적용에 대하여, 본 의제는 현재 진행 중인 작업이므로 별도의 코멘트 없이 85차에서 논의하기로 하기로 함

[IMO 규정의 개정 필요성]

☐ **주요 결정사항**

○ 본 건은 유조선과 산적화물선을 위한 GBS와 관련되므로, MSC 85차 작업에서 논의하기로 하기로 함

○ 아국에서는 본 의제에 대하여, GBS는 협약 상 강제사항으로 규정될 것이므로 SOLAS XII Resolution 5 및 MARPOL 부속서 1의 4장 19.8 등과 같은 규정에 주석으로 언급하기 보다는 본문에 이를 명확하게 명시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을 제안하였음

[GBS 통신작업반 보고서 검토]

☐ **논의경과 및 주요 결정사항**

가. 본회의장(Plenary) 논의 경과

○ 제출된 문서에 대하여 개략적인 소개가 있었음

○ W/G을 위한 Provisional TOR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 각국의 코멘트를 요청함
TOR 1 : CG에서 제안된 우선순위 작업계획을 검토하고, 우선순위와 일정을 포함하는 최종작업계획을 마련할 것
TOR 2 : 포괄적(generic)인 GBS 프레임워크의 개발
TOR 3 : GBS 가이드라인 개발
TOR 4 : GBS의 CG를 만들 것인가, 그렇다면 CG의 TOR을 마련할 것
TOR 5 : Plenary에(2008. 5. 15)에 보고서 제출

○ 작업범위(TOR 2/3) 포괄적인(generic) GBS 프레임워크/지침의 개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안이 제안되었음

⑴ 제1안 : 전 선종 및 선박의 전 분야에 대한 SLA 기반의 GBS를 개발함, 즉 WG을 위한 Provisional TOR을 수정 없이 작업하기로 함(스웨덴, 독일, 덴마크, 폴란드, 영국 등 지지)

⑵ 제2안 : New ship construction에 한해서 포괄적인(generic) GBS 작업을 할 것을 주장함(바하마, 그리스, 파나마, 멕시코, 가나, 말타 등 지지)

⑶ 제3안 : 우선 결정론적기반의 GBS(유조선 및 산적화물선을 위한 GBS)에 집중하고 SLA 기반의 현 GBS 작업도 같이 수행을 한 후, 두 작업결과를 비교하여 다른 영역까지 확대 적용할 것을 제안함(중국, 이태리, 터키, 리베리아, 마셜아일랜드 등 지지)

○ 세 가지 안에 대한 의견은 서로 대등하게 대립되었으며, 본회의 의장은 TOR 2에 대하여는 신선박의 선체건조(hull construction of new ships)에 국한하여 포괄적인 GBS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도록 하고 작업반(WG 1)을 구성하였음

○ 작업반에서는 결정론적 방법론(deterministic approach)과 안전수준기반 방법론(Safety Level Approach: SLA)을 특정하여 국한하지 않은 포괄적인 GBS의 구조(framework)를 정의하고 관련 지침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또한 포괄적 GBS 개발을 위한 장·단기 작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음

- MSC 85차 (2008. 11) : 유조선 및 산적화물선을 위한 결정론적(deterministic) 기반의 GBS 완성
- MSC 86차 (2009. 5) : GBS를 개발하기 위한 포괄적인 지침서 완성 및 향후 GBS 개발 및 적용방안 검토
- 장기적으로 "두 방법론의 비교 검토, 현재의 규칙/규정의 안전수준 정의, 관련 IMO 규정 및 선급규칙의 제·개정 등" GBS 지침서의 보완 및 통합 GBS 개발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기로 함

○ 본회의장에서는 상기와 같은 작업반의 논의결과를 승인하였으며, GBS 관련 통신작업반(의장 : 독일)을 재구성하고 차기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였음

나. 작업반(WG 1 - 의장 : 미국 Patrick Little, 참가자: 약 70명(30개국)) 논의경과

○ Plenary 회의에서 결정된 작업범위(TOR)를 확인하였음

○ CG 제출된 관련 문서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 및 기타 의견을 물음

○ TOR 2 언급된 문구 중 의미전달이 모호한 "generic", "at this stage", "at a later stage"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할 것을 요청함(한국 코멘트)
→ "generic"의 의미는 모든 선종을 포함하여 해상안전과 환경보호의 여러 분야에 적합한 광범위하고 종합적이어야 한다는 독일대표의 의견에 이견이 없이 동의하였으며,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는 open discussion으로 결정하였음

○ SLA 기법만을 적용하는 방법과 Deterministic과 SLA 방법간의 결과 차이를 발견

하고 이를 보완하여 나가자는 방법이 대립하였으나 포괄적인 GBS 개발을 위해서는 서로 간의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함

○ 포괄적인 GBS 프레임워크 및 개발을 위한 지침서 개발:

⑴ TOR 3(일반적인 GBS 지침 개발)과 관련하여 WG 의장은 MSC 82/5/8(일본) 및 MSC 83/5/5(스웨덴) 문서를 기초하여 "GUIDELINES FOR CREATING GBS"만들었으며 지침의 각 항목들에 대하여 의견을 받아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였음

⑵ 기본원칙(Basic Principle): MSC 80/24의 6.38절에 따른 기본원칙을 재확인

⑶ 용어의 정의 (Terminology): "Goal-based standard 및 goal-based approach"에 대한 정의를 함

⑷ 최상위 레벨 안전항목(Top level Safety Objective)의 작성과 관련하여

- IMO Mission인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해운업(shipping)을 강구하자는 statement에 충실하여야 한다는 의견제시 함
- 금번 지침서 작성단계에서는 안전항목의 상세요소를 일일이 언급하지 않기로 함

⑸ 다음 용어(Definition/Terminology)에 대한 정의를 하였음

- 목적(Goals)
- GBS(Goal-based standards)
- GBS 기본골격(Goal-based standards framework): MSC 78/6/2 부록에 있는 그림을 기초로 하여 포괄적인 GBS 프레임워크를 작업하기로 함

⑹ 지침서의 제목에 "generic"을 포함하기로 함

⑺ 기능요건(functional requirements, Tier Ⅱ)의 정의방법

- 기능요건을 정의하는 방법을 구체화 함(경험, 기존 규정, 기타 위험요소를 식별하기 위한 체계적 해석 방법을 활용함)
- Tier Ⅰ 및 Tier Ⅱ를 정의하는 예로서 이전 문서(MSC 81/6/8)에서 제안한 도표를 인용하기로 함

⑻ 검증절차(verification of compliance, Tier Ⅲ)

- Tier Ⅳ와 Tier Ⅴ 규정을 검증하는 절차는 Tier Ⅰ과 Ⅱ 모두를 만족하는 것으로 함
- 검증절차(Tier III)는 골격(GBS frame-work) 내에 있는 것으로 함

○ 우선순위 작업계획에 기초하여 GBS 개발을 위한 "포괄적인 지침서"를 완성하고 MSC 86차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GBS 통신작업반을 가동하기로 함(Coordinator 는 독일에서 수행하기로 함)

○ 우선순위 작업계획(Prioritized work plan):통신작업반 보고서(MSC84/5/3)의 52절과 54절에 제시된 우선순위 작업항목들을 검토하고 포괄적인 GBS 지침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다음 수서로 작업하고 각 작업항목들이 포괄적임을 확인할 것

⑴ 선박을 위한 규칙 및 규정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방법 및 평가기준에 초점을 맞추어 "검증절차(verification of compliance)"를 확장

⑵ MSC 84/5/3의 52.4절의 관련항목을 고려하여 GBS의 유효성(effectiveness)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절차개발

⑶ MSC 84/5/3의 52.2절의 관련항목을 고려하여 포괄적인 GBS 프레임워크를 더욱 정교하게 만든다.

⑷ 지침서의 적용에 필요한 정의(definitions) 및 용어(terminology)를 개발

⑸ IACS CSR(Oil tankers)을 이용한 GBS 검증절차를 시험적용하여 얻은 교훈(lessons)을 지침서에 반영시킴

○ 포괄적인 GBS 개발을 위한 다음과 같은 장단기 작업계획을 논의하였음

⑴ 단기 작업계획

- MSC 84(2008. 5)~MSC 85(2008. 11) 회기 중간
  ① Pilot Panel의 GBS Tier Ⅲ 검증절차 2차 시험적용 및 검증절차의 지침서 완성
  ② MSC 86차에 마무리 할 목적으로 GBS 통신작업을 통한 GBS를 개발하기 위한 포괄적인 지침서를 개발
- MSC 85차 (2008. 11)
  ① 유조선과 산적화물선을 위한 GBS Tier Ⅰ~Ⅲ 완성/승인 및 관련 SOLAS 개정안 승인
- MSC 85(2008. 11)~MSC 86(2009. 5) 회기 중간
  ① GBS 통신작업을 통한 GBS 개발을 위한 포괄적인 지침서를 계속개발
- MSC 86차 (2009. 5)
  ① GBS를 개발하기 위한 포괄적인 지침서 완성
  ② 안전수준 개념 결과의 타당성을 인증하기 위한 계획을 개발(예로서, 결정론적 방법과 안전수준접근법(SLA) 또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유조선과 산적화물선을 위한 GBS를 비교함)
  ③ 장기적인 GBS 개발 및 적용방안 논의

⑵ 장기 작업계획(MSC 86차 이후)
  ① GBS를 적용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분석하고 그 교훈(lessons)을 GBS 개발을 위한 지침서에 반영
  ② 안전수준접근법(SLA) 결과의 타당성을 인증하기 위하여 결정론적 방법에서 얻을 결과와 비교
  ③ 현재 규칙/규정(rules/regulations)의 안전수준을 결정
  ④ 보강된 체제(basis)를 기반으로 GBS의 적용을 다른 선종에 확대
  ⑤ 신조 선박의 설계와 건조의 모든 측면을 고려한 GBS의 확장 검토
  ⑥ 모든 새 규정 영역 및 현 규정의 모든 개정규정에 대하여 기능요건을 단계별로 정식화
  ⑦ IMO의 모든 신 규정 또는 개정 규정, 선급규칙 및 강제기준들은 승인된 형식으로 설명서(commentary)를 만들어야 하고, 이 설명서에는 명시적(explicitly)으로 어떤 기능요건이 제기되었는지 언급하고 규정에 대한 중요원칙(substantial basis)을 언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⑧ GBS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작업 프로그램 항목을 제출하기 위한 절차를 분석

의제 6 | LRIT 관련 사항

[특별작업반 결과보고서 승인]

☐ **주요 결정사항**

○ 위원회는 성능기준 및 기능요건 개정안을 결의서로 채택하고, 기술사양 임시개정안 회람문서에 대하여 승인함

[선박의 LRIT 정보 보고주기]

☐ **주요 결정사항**

○ 위원회는 성능기준 및 기능요건 개정안을 결의서로 채택함

[선박설비의 형식승인]

☐ **주요 결정사항**

○ 위원회는 선박설비의 LRIT정보 송신요건 적합성 검사 및 증명서교부에 관한 지침을 승인함

[Coordinator에 관한 성능기준 개정안]

☐ **주요 결정사항**

○ 위원회는 위원회의 검토 및 승인, 수락 또는 승인을 전제로, 개발 테스트를 완료한 DC가 생산 단계로 통합되도록 임시승인하는 권한을 IMSO에 부여함

[LRIT제도 적용제외 범위 확대]

□ **주요 결정사항**

○ 위원회는 특별작업반의 Terms of reference에 작업반의 요청사항을 포함시킴

[LRIT 시스템의 재정적 건정성 확보]

□ **주요 결정사항**

○ 위원회는 작업반에서 제안한 재정모델을 승인(Endorse) 함

- 이용자 부담원칙 : 기국 · 항만국 · 연안국은 요청 · 수신한 LRIT정보 이용료 부담
- NDC, RDC 및 CDC 구축 협약 체약국은 구축, 개선 및 변경에 따른 비용을 부담
- LRIT시스템 유지를 위한 협약 체약국의 LRIT정보 이용 장려
- 협약 체약국의 비용 회수 및 손익과 외주업체의 손익 원칙
- LRIT정보의 종류별 정보센터(DC)간 과금방안
- 수색및구조(SAR)를 목적으로한 LRIT정보 이용료의 간접비 처리
- 정보센터(DC)로서 선박모니터링시스템(VMS)의 활용
- 재정모델의 공평성, 투명성 및 공정성 확인을 위한 LRIT시스템 검토

[기타사항]

○ LRIT시스템 이행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협정서 모델 개발

☞ 위원회는 협정서 모델 개발이 더 이상 추진되지 않는 대신, 임시조치로서 모든 DC는 규칙 V/19-1, 개정된 성능기준 및 기술사양에 적합하여야 하고 개발 및 통합 테스트를 완료하며 재정 및 운영 지침에 적합하여야 함을 결정함

○ MSC 84차 및 85차 사이의 특별작업반 운영

☞ 위원회는 위원회를 대신하여 특별작업반에서 기술사양 개정안을 검토 및 채택하도록 하고, LRIT시스템 유지계획 개발을 요청함
또한, 특별작업반에서 LRIT 시스템의 테스트와 통합을 위한 문서를 개발, 동의 및 채택하도록 함

○ LRIT 정보분배계획(DDP)에 대한 경고문 게시

☞ 위원회는 MSC 85차의 검토 및 최종결정을 위하여 DDP에 대한 임시적인 경고문을 허용하고 협약 체약국의 의견 및 제안을 요청함

○ LRIT관련 지침 회람

☞ 위원회는 수색 및 구조 목적의 LRIT정보제공에 관한 지침과 LRIT시스템 이행에 관한 지침을 회람문서로 발행함

○ 임시 국제정보교환기(IDE) 구축

☞ 위원회는 임시 국제정보교환기(IDE) 구축에 관한 결의서를 채택함

의제 7 | 항해 안전(NAV) 전문위원회 결과

[NAV 53 전문위원회 결과보고서 검토]

□ **주요 결정사항**

○ NAV 53에서의 결정사항에 대해 위원회에서는 전체 보고서를 승인하였으며, 보고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

(1) 선교 항해 경보장치(BNWAS: Bridge Navigational Watch Alarm System)의 탑재 강제화와 관련하여, 경보장치 탑재 강제화 및 SOLAS V/19 규칙 개정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 것을 주목하였음

(2) 레이더 장비 자체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장비의 성능기준에 더하여, 레이더가 100%의 작동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맹목구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레이더 장비 설치를 위한 지침서를 승인(SN.1/Circ....)함

(3) e-Navigation과 관련하여, "e-Navigation 개념의 정의, 핵심 목적, e-Navigation 개발에 따른 이점과 단점, 현재의 시스템과 e-

Navigation 시스템 간의 gap 분석"과 같은 전문위원회의 해당 논의경과를 주목함

⑷ 본선 ECDIS 탑재 요건 개발에 관한 논의 경과에 주목함
(선종별, 톤수별 선박의 ECDIS 탑재에 관해 NAV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며, NAV 53까지는 구체적인 결정사항이 없었음)

⑸ COLREG 협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한 IACS 통일해석 관련 사항을 승인(MSC.1/ Circ....)함

⑹ 유목(Driftwood)으로 인한 해양사고 방지와 관련하여 "SOLAS V/31 규칙에 따라 유목에 대한 정보를 인근 선박과 해당 주관청에 통보" 하도록 하는 MSC 회람(MSC.1/Circ....)을 승인함

의제 8	위험물, 고체화물 및 컨테이너 (DSC) 전문위원회 결과

[DSC 12 전문위원회 결과보고서 검토]

□ **주요 결정사항**

○ DSC 12에서의 결정사항에 대해 위원회에서는 전체 보고서를 승인하였으며, 보고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

⑴ IMDG 코드 관련으로 다음사항을 결정하였음

- 위험물 운송 선박의 개정된 비상 대응 절차(EmS)와 관련하여 기존 물질에 더하여 14개 위험물질의 화재 등급 및 오염 시 대응 계획에 관한 내용을 추가한 EmS 지침 개정을 위한 MSC 회람(MSC.1/Circ....)을 승인함
- IMDG 코드 관련 육상 관계자에 대한 교육 논의 시, 인터넷을 통한 코드 전문의 무료 배포가 교육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제안에 대하여, 전문위원회 및 TC 등에서 관련 사항의 효과 및 재정적 영향을 분석한 후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함
- 금번 개정 IMDG 코드 발효 이전, IMDG 코드에서 포함하고 있는 해양오염물질규정의 이행을 위한 DSC.1/Circ.54 및 DSC.1/Circ.55를 채택한 DSC의 결정사항을 승인함
- 개정 IMDG 코드(34-08)를 채택함(의제 3 참조)

⑵ 국제 해사 산적 화물 코드(International Maritime Solid Bulk Cargoes Code, IMSBC Code) 관련 다음 사항을 결정하였음

- IMSBC 코드 강제화를 위한 SOLAS 개정 초안을 승인함 (MSC 85 채택 예정)
- IMSBC 코드 초안을 승인하였으며, MSC 85에서 채택 예정임
동 사항과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MSC 84/ 8/1로 "IMSBC 코드 개정 초안의 내용 중, 서문 및 제1절 1.1과 1.4항의 신설 그리고 1.2.2항 내용의 일부 수정"을 제안하였으며, 위원회는 DSC 13에서 해당 문서를 검토하여 결과를 보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
또한 사무국에 해당 검토 내용을 ISMBC 코드에 반영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 MSC 85에서 최종 채택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 DSC에서는 각 협약 당사국에 개정 IMDG 코드 적용 일자와 같은 일자에 IMSBC 코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발적으로 적용해 주도록 권고한 점을 주목하였음
- IMSBC 코드의 개정에 따른 INF 코드의 참조 문구 개정사항을 승인하였음(INF 코드의 개정사항은 MSC 85에 채택 예정임)

⑶ DSC 12에서는 특수목적선 코드(SPS Code)의 적용과 관련하여, 연구 목적 또는 기타 다양한 용도로 IMDG 코드에서 언급하고 있는 위험물질이 선용품으로 본선에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물질은 IMDG 코드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결정되었음. 해당 사항은 최종 검토를 위하여 DE 전문위원회에 이관되었으며, 위원회는 이러한 논의 경과를 주목하였음

⑷ 컨테이너 고박 작업 시의 인명 안전에 관한 권고 개정(안)을 승인(MSC.1/Circ....)함

⑸ DSC 12는 컨테이너 고박과 관련한 안전한 작업 지침 제공과 관련하여 작업 지침은 이미 논의가 완료되었으나 CSS 코드의 개정은 논의가 완료되지 못한 상태임을 인지하고, CSS 코드 개정이 완료된 이후 지침 및 코드의 개정(안)을 동시에 제출하도록 결정하였음. 위원회는 그러한 논의 경과에 대하여 주목하였으며, SLF에 동 사안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

⑹ "선박에서의 안전한 살충제 사용에 관한 권고"를 MSC.1/Circ.... 및 MSC.1/ Circ....로 승인함

⑺ 포장된 형태의 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에 적용되는 SOLAS Reg. Ⅱ-2/19.3의 〈표19.3〉 및 2000 HSC Code 〈표7.17-3〉의 방화 및 소화설비 기준을 현재 IMDG 코드에 합당하도록 개정하고, 관련 결과를 FP 전문위원회에서 추가 검토하도록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주목하였음

⑻ 포장된 형태의 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에 적용되는 SOLAS Reg. Ⅱ-2/19.3의 〈표19.3〉 및 2000 HSC Code 〈표7.17-3〉의 방화 및 소화설비 기준의 적합확인서(DoC)를 MSC 회람(MSC.1/Circ....)으로 승인함

["Class 7 방사능 물질을 포함한 IMDG 코드 위험물 운송의 어려움" 관련 결의서에 대한 사무국의 대응 체제]

☐ **주요 결정사항**

○ "Class 7 방사능 물질을 포함한 IMDG 코드 위험물 운송의 어려움"에 대한 결의서와 관련하여 사무국에서는 관련 화물 운송 거부, 지연 등과 같은 사건 발생 시 이를 기록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Dangerous Goods Carriage Database, DGCD)를 구축하고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IMO, IAEA 및 ICAO 3개 기구와 협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음을 위원회에 보고하였으며, 위원회는 해당사항에 대하여 주목하였음

[산적화물선의 시간당 화물 적재 비율]

☐ **주요 결정사항**

○ INTERGARGO에서는 최근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적화물선에 대하여 선박의 안전 및 BLU 코드의 요건에 맞지 않는 화물 터미널에서의 화물 적재와 관련한 문제점을 언급하였으며, 상세 조사 결과가 차후 제출될 것이라고 밝힘

○ 위원회에서는 INTERGARGO의 제공 정보에 주목하였으며, 관련사항을 DSC로 제출하여 추가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하였음

의제 9 | 방화(FP)전문위원회 결과

[FP 52 전문위원회 결과보고서 검토]

☐ **주요 결정사항**

○ FP 52에서의 결정사항에 대해 위원회에서는 전체 보고서를 승인하였으며, 보고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

⑴ SOLAS 74에 언급된 기관구역 및 화물펌프실용 고정식 가스소화 장치와 동등한 장치의 승인에 관하여 개정된 지침(MSC/Circ. 848)의 개정을 승인(MSC.1/ Circ....)함

⑵ 캐빈 발코니용 고정식 고압 물분무 및 물소화장치의 승인을 위한 지침을 승인(MSC.1/Circ....)함

⑶ SOLAS 규칙 II-2/12에 언급된 스프링클러와 동등한 소화장치의 승인을 위한 개정된 지침(Res. A.800(19))의 개정에 관한 MSC 결의서(Res. MSC....(84))를 채택함

⑷ 기관구역 및 화물펌프실용 물소화장치와 동등한 장치의 승인을 위한 개정된 지침(MSC/Circ.1165)의 개정을 승인(MSC. 1/Circ....)함

⑸ SOLAS 74에 언급된 기관구역용 고정식 가

스소화장치와 동등한 고정식 분무 소화장치의 승인을 위한 개정 지침을 승인(MSC.1/Circ....)함

⑹ 기관구역 및 화물펌프실의 보호를 위한 고팽창 포말 관련 지침을(MSC.1/Circ....) 승인함. 또한 지침이 2009. 7. 1일에 발효되도록 하는 전문위원회의 결정을 승인함

⑺ 결의서 A.123(V)에 언급된 것과 동등한 ro-ro 구역 및 특별분류 구역을 위한 고정식 물소화장치의 승인을 위한 지침을 승인(MSC.1/Circ....)하고, 가능한 한 조속히 이행되어야 한다는 전문위원회의 결정을 승인함

⑻ 요구되는 호흡장치를 위한 적절한 수의 예비충전과 재충전에 관한 SOLAS 규칙 II-2/10의 개정 초안을 승인함(MSC 85 채택 예정)

⑼ 소화안전장치의 성능테스트 및 승인기준의 개발을 위한 개정된 작업계획에 관한 전문위원회의 성과에 주목함

⑽ 3중 프레임으로 된 방화문의 설치규제에 관한 SOLAS 규칙 II-2/9의 개정 초안을 승인하고, 이 개정이 신조선에만 적용될 것에 주목함

⑾ FTP Code의 통합해석에 관한 MSC 회람(MSC.1/Circ....)을 승인함

⑿ 여객선 외부구역의 화재위험의 평가를 위한 지침을 승인(MSC.1/Circ....)함

⒀ 통풍관의 내화성 관련문제에 관한 SOLAS 규칙 II-2/9.7의 개정 초안을 승인함(MSC 85 채택 예정)

⒁ SPS Code의 검토 관련문제의 전문위원회의 검토결과에 주목함

⒂ 위험물운송을 위한 요건의 적용에 관한 SOLAS II-2장의 개정 초안을 승인하고, DSC 13으로 하여금 개정 초안을 검토하여 MSC 85에 검토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전문위원회의 권고를 승인함

⒃ 위험물운송 요건 적용에 관한 2000 HSC 코드 개정 초안을 승인함. 그러나 승인된 코드 초안에 대하여 DSC 13으로 하여금 추가 검토하여 결과를 MSC 85에 제출하도록 하였음

⒄ 선상 휴대식 소화기 수량 및 비치에 관한 SOLAS II-2장의 통합해석에 관한 MSC 회람(MSC.1/Circ....)을 승인함

[기타 검토사항]

☐ **주요 결정사항**

○ ISO 규격 중 ISO 15364, "Ships and marine technology pressure/vacuum valves for cargo tanks"가 2000년판에서 2007년판으로 개정되었음을 주목함

의제 10	산적액체 및 가스(BLG) 전문위원회 결과

[BLG 12 전문위원회 결과보고서 검토]

☐ **주요 결정사항**

○ BLG 12에서의 결정사항에 대해 위원회에서는 전체 보고서를 승인하였으며, 보고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

⑴ 가스 연료 선박에 대한 규정 개발 논의 관련 다음사항을 주목함

- IGF 코드(International Code of Safety for Gas-fuelled engine installations in ships) 개발 관련 논의가 BLG 통신작업반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BLG 12에서는 해당 논의에 대하여 2단계로 나누어 규정을 개발하는데 동의하였으며, 첫 번째는 LNG를 연료로 하는 선박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먼저 개발하기로 하였음

⑵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련 논의에 대하여, 다음 결정사항을 주목함

- MARPOL 부속서 1의 화물 및 선박연료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와 관련하여, BLG에서는 선하증권, 기름인도증 또는

다른 선적서류에 식별된 제품 이름을 기초로 MSDS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것과 제품의 특성에 관하여 MSDS에 있는 정보는 운반되는 제품을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 합의하고, 차기 회의에서 MSC.150(77) 개정(안)을 마련하여 추가 검토키로 함

의제 11	선박설계 및 의장(DE) 전문위원회 결과

[DE 51 전문위원회 결과보고서 검토]

□ 주요 결정사항

○ DE 51에서의 긴급한 사항의 보고와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

⑴ 검사 강화(ESP) 지침과 관련하여 IACS의 검사 강화 관련 지침(UR Z.10)에 대한 사항과 결의서 A.744(18)의 규정에 대한 조화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DE 51에서 통신작업반을 구성한 사항에 대하여 주목함

⑵ 특수목적선(SPS) 코드를 채택(Res. MSC.xxx)함. 그러나 심도있는 논의 이후에도 재론의 여지가 있는 이탈리아 등에서 제기한 "화물 운송자 및 offshore platform 작업자 등의 "special personel"에 대해 안전 및 운항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았으므로 여객으로의 정의" 항목(1.2.3항) 삭제와 관련하여서는, 새로운 작업 계획을 제출하여 추가로 논의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⑶ 경보 및 지시장치 코드 개발과 관련하여 현재 NAV에서 논의 중인 통합선교시스템(IBS) 논의사항 및 최근 현황을 반영한 코드 초안의 작성을 IACS에 요청한 사항에 주목함

⑷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기준 개정 및 각 협약의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MODU 코드 개정 진행 사항을 주목함

⑸ 국제구명설비(LSA) 코드 개정(안) 승인.(MSC 85 채택 예정) 또한 상기 LSA 코드 개정과 관련한 구명설비 시험기준(MSC 81(70))을 승인함

⑹ "전폐형 구명정 내부에서의 방수복 착용 지침"을 승인(MSC.1/Circ.....)함

⑺ 검사용 접근설비에 대한 부식방지 지침에 대해 다음사항을 변경하여 승인(MSC.1/Circ.....)함

- 보호도장기준에 언급된 내용대로 요구사항에서 지침으로 변경
- 도금 및 도금 후 도장시의 적용 표준은 ISO 1461+도료업체 추천
- 도금 후 도장시 표면처리는 ISO 12944-5 혹은 도료업체 추천

⑻ 새로운 형식(Novel type)의 구명설비 승인 기준 관련, DE 51의 결정사항에 주목함

["구명정, 진수장치 및 부하상태이탈장치 관련 서비스 제공자의 허가 요건"에 대한 임시 권고(안)]

□ **주요 결정사항**

○ "구명정, 진수장치 및 부하상태이탈장치 관련 서비스 제공자의 허가 요건"에 관한 MSC 회람 내용 중 독립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해당 장비 제조자의 의무 규정과 관련하여, IMO가 제정한 규칙이 상기 사안을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인 검토 요청이 DE 51에서 있었음

○ 이에 대하여 사무국은 "주관청에서 해당 장비 제조자가 독립된 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지침 및 장비를 제공하도록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내용"으로 상기 사항에 대한 수정을 제안하였으며, 위원회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관련 내용을 수정하고 지침을 승인(MSC.1/Circ.....)함

[보호도장 성능기준]

□ **주요 결정사항**

○ 위원회는 보호도장 성능기준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에 주목하였음

○ IACS 제안(MSC 84/11/6)과 관련하여 그리스에서는 IACS UI의 스트라이프 코팅(Stripe Coating) 관련 롤러의 사용 및 사용제한에 대해서 "A roller may be used for scallops, ratholes, etc., but not for edges and welds." 내용을 추가해 줄 것을 제안하였으며, 많은 회원국의 찬성으로 제안은 채택되었음

[산적화물선의 정의]

☐ **주요 결정사항**

○ "산적화물선의 정의"와 관련한 논의에 대하여, 위원회는 이번 회기에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회기간 작업반을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상세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음

○ 회기간 작업반 회의는 MSC 85 회의와 연계하여 2008. 11. 24~11. 25일 양일간 개최하기로 결정되었음

의제 12	선원훈련 및 당직(STW) 전문위원회 결과

[STW 39 전문위원회 결과보고서 검토]

☐ **주요 결정사항**

○ STW 39에서의 긴급한 사항의 보고와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

⑴ STCW 협약 및 코드의 전면 검토와 관련한 작업의 진행사항에 대해 주목하였음

⑵ STCW 협약 및 코드의 전면 검토 후 발생하는 STCW협약 및 코드의 개정안 채택을 위한 외교회의 개최를 원칙적으로 승인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제100차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함

⑶ STCW 협약 및 코드의 전면 검토와 관련한 향후 회의계획에 동의하였음

- STCW 협약 및 코드의 전면 검토를 위한 작업의 진행사항으로서 2008년 9월에 "특별회기간 작업반" 회의 개최가 결정됨
- MSC/MEPC 인적요소에 대한 합동작업반에서의 세부검토를 위해 의제문서(STW 39/6/1)를 전달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항을 승인하고, 작업반에 검토를 요청함
- "STCW 코드 제6장 중 선상에서 훈련이 불가능한 영역" 식별 관련 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목하고, 선상훈련 불가영역에 대한 교육을 선원들에게 실시해야 한다는 노르웨이의 제안에 대해 STW 40의 추가 검토를 요청하였음

⑷ 선박의 안전배승기준 설정원칙 검토와 관련한 작업의 진행사항을 주목함

의제 13	일반화물선의 안전

[일반화물선의 안전]

☐ **주요 결정사항**

○ MSC 84에서 동 사안에 관한 제출 문서는 없었음. 그러나 위원회는 MSC 83에서 결정한 대로 의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차기 회의에 회원국의 의견을 요청하고 다음 회기에서 논의를 하기로 결정하였음

의제 14	협약 제 · 개정의 이행을 위한 역량 개발

[새로운(제 · 개정) 협약의 이행을 위한 역량 개발]

☐ **주요 결정사항**

○ 사무국에서 제출된 위원회 지침의 개정 내용에 대하여, 위원회에서는 해당 사항과 관련하여 "협약 이행을 위한 역량 개발 및 기술협력 프로그램 개발의 관계를 평가"에 관한 실질적인 이행 관련 문제 및 "평가를 받아야하는 조건" 등에 대하여 추가의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하고 통신작업반(의장: 남아프리카 Mr. Dumisami T. Ntuli)을 구성하여 논의하기로 결정함

○ 통신작업반의 작업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작

업반 보고서는 MSC 85에 제출될 예정임

[작업 범위]

- MSC 84/14(사무국) 문서의 새로운(제 · 개정) 협약의 이행을 위한 역량 개발에 대한 검토
- 평가를 받아야하는 조건 개발
- 새로운 작업 계획 제안과 관련하여 포함되어야 할 최소 정보 요건 검토
- 새로운 협약의 제 · 개정 논의 시에는 그 이행을 위한 역량 개발 관련 메커니즘 개발

의제 15 | 인적요인의 역할

[ISM 코드의 개정]

□ **주요 결정사항**

○ ISM 코드 개정과 관련하여, MSC/MEPC 합동작업반에서 상기 문서를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코드 개정(안)을 제출하였음

《"선원안전대표자(seafarer safety representative)"에 관한 규정의 신설》

- 선원안전대표자의 정의를 "안전관리사안에 관하여 선원을 대표하기 위하여, 해원에 의해 지정되거나 선출된 자로서 선장이외의 선원"으로 규정하였음(1.1.13항 신설)
- 회사는 각 선박에 선원안전대표자로 선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선출된 자가 방해없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육상 또는 선박으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3.4항 신설)

《ISM Code의 안전관리증서(SMC)의 유효기간 연장》

- 아국의 제안에 대하여 일본, 파나마, 그리스 등 다수 국가가 아국의 제안에 지지하였으며, 그 결과 ISM 코드의 증서발급 및 검증(제13항)에 이를 반영하였음(13.12항-13.14항 신설)

《기타 과거 제출 문서에 대한 검토》

- IACS는 FSI 11차 및 12차에 제출하였던 의제들(FSI 11/7/2, FSI 12/7/1)에 대해 2002년 및 2003년도에 제출된 사항을 금번 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논의에서 철회하였음
- IACS는 현행 ISM 코드의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FSI 13에 다음과 같이 코드의 개정을 제안하였으며, 제안을 반영하여 각 항목이 개정되었음
  - 1.1.10항 - 중부적합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정의" 개정
  - 1.2.2.2항 - 본선의 "위해요소 평가" 요건의 명확화
  - 5.1.5항 및 12.1항, 12.2항 - 본선의 SMS 검토 주기의 명확화
  - 7항 - 본선운항계획서 작성
  - 8항 - 비상대응계획의 작성 등에 대한 문구를 명확히 함
  - 9.2항 - 부적합사항, 사고 및 위험요소 발생에 대한 분석 및 보고

○ 본회의장에서는 작업반 논의결과에 대하여 "선원안전대표자(seafarer safety representative)"에 관한 규정은 그 이행 및 관련 요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회원국의 제안에 따라 채택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채택을 승인하였음

[ISM Code의 이행 지침서 개정]

○ 주관청에서의 ISM 코드 이행을 위한 지침(Res. A.913(22)) 개정과 관련하여, MSC/MEPC 합동작업반에서 아래의 각 회원국의 제안에 대하여 검토하였음

《수시 외부 심사의 추가점검항목 제안》

- EU 국가에서의 ① 수시 안전관리적합증서(DoC)의 발급과 관련한 선박 및 회사의 외부 심사 항목과 ② 선박출항정지 후 선박에 대한 외부 심사 항목 등에 대한 결의서 A. 913(22)의 개정안에 대하여, 터키 및 다수의 국가가 수시 안전관리적합증서의 발급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한 수시 외부 심사 항목이 현실적으로 이행

하기 불가능한 점이 많다는 지적을 하여 채택되지 못하였음. 그러나 미국, 그리스, 호주 등에서는 EU 의견을 지지하였음

《아국 제안사항》

- 아국 제안사항(FSI 12/7/4)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음
  - 회사의 내부감사 주기를 1년 마다 실시하도록 제안하였으나, 이에 대한 사항은 이미 MSC회의에서 채택한 다른 지침(Guidance)에 반영되었고, 바하마 등 일부 국가의 경우 내부감사 주기를 1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반대하였음. 그 결과 아국의 제안은 반영되지 않았음
  - 대행기관 또는 기국 변경에 따른 통일된 절차를 제안하였으나, 대행기관(RO)은 IACS 정회원이외에도 많고, 일부 국가는 RO의 지정없이 직접 ISM업무를 집행하고 있어 제안된 절차가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반영되지 않았음
  - 부적합사항의 처리절차 등 기타 규정 변경 및 문구 수정의 제안사항은 반영되었음

○ 그러나 MSC/MEPC 합동작업반은 동 주관청에 대한 지침이 제26차 총회(2009년)에서만 채택될 수 있으므로, 동 회의에서 모든 사항을 결정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회원국의 추가 의견에 대한 검토(2009년 MEPC 59에서 검토)를 거쳐 채택하기로 하였음. 이에 따라 위원회에서는 회원국의 추가 의견을 요청하였음

[소형어선의 안전에 관한 권고(안) 검토]

□ **주요 결정사항**

○ 길이 12미터 미만 소형선박에 대한 국제적인 안전 지침의 서문, 제1장, 제11장 및 부속서 I의 내용에 대하여 권고(안)의 목적 및 범위에 대한 일부 규정(1.1.3항, 1.1.4항)을 수정하고 완료하였음

[기타 검토사항]

□ **주요 결정사항**

○ 라이베리아 대표는 회사 및 선원들이 준사고(Near-miss)와 관련한 데이터를 문서화 및 정보화하도록 하는 지침을 IMO 차원에서 개발할 것을 제안하였음. 그 내용에는 준사고(Near-miss)의 정의, 준사고의 보고를 어렵게 하는 장애극복 방법, 그리고 준사고의 조사 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음. (MSC 84/15/4)

- 논의 결과 일부 문구를 수정한 후 MSC-MEPC.7 Circular(Guidance on Near-miss Reporting)를 개발하여 승인하였음

○ Paris MoU에서는 2007.9.1 - 11.30 동안 MoU에서 시행한 ISM 코드 관련 집중검사캠페인(CIC) 결과를 소개하고 있으며, 2008년 집중검사캠페인(CIC) 대상은 VDR, AIS 및 ECDIS를 포함한 SOLAS 제5장(항해의 안전)에 초점을 둘 계획이라는 정보를 제공하였음(MSC 84/INF.7)

○ ICS 등 비정부단체는 "인적요소 특별작업반(Human Factors Task Group)"을 구성하여 작업한 결과를 보고(STW 39/6/1)하였음. 그 주요 내용은 위험물운반선 승무하는 모든 선원과 업무상 탱커선에 승선하는 육상 기술자, 수리업자, 검량/검수/검정사, 점검자 등도 탱커기초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을 제안하고 있음

- 이에 대해 제안 문서에는 선원뿐만 아니라 육상근무자에 관한 교육훈련 요건이 포함되어 있어 관련 규정의 재검토가 요구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논의 결과 이 사안은 통신작업반을 구성하여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인적요소에 대한 MSC/MEPC 합동 작업반"에 보고하기로 하였음

○ 기구의 전략에 명시된 인적요소의 실행계획을 검토한 후 "안전문화(Safety Culture)"에 관한 사항의 MSC 83차 및 84차 결과를 반영하였고, 개최 예정인 NAV 54차 회의에서는 도선사승하선절차를 검토할 것 등을 반영하였음

의제 16 공식 안전성 평가 (FSA)

[공식 안전성 평가 (FSA)]

□ **주요 결정사항**

○ 동 의제와 관련하여 회원국에서 제출 문서는 없었으나, 위원회에서는 환경 위험성 평가 기준과 관련하여 MEPC 57에서 결과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또한 FSA 연구 관련 및 FSA 전문가 그룹 설립에 대한 회원국의 의견을 요청하면서 차기 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지속하기로 하였음

의제 17 선박에 대한 해적 및 무장 강도 행위

[해적행위 및 무장강도를 예방 및 억제하기 위한 현행 지침의 개정]

□ **주요 결정사항**

○ 선박에 대한 해적 및 무장강도 행위에 대한 정부 및 선박소유자의 대응태세를 규정하고 있는 지침(MSC/Circ.622/Rev.1 및 MSC/Circ.623/Rev.3) 및 선박에 대한 해적행위 및 무장강도의 범죄의 조사를 위한 실무 규칙(A.922(22))의 최신화 및 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작업 범위 하에서 통신작업반(의장: 덴마크 Ms.Birgit Solling Olsen)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음

○ 통신작업반은 MSC 86차 회의까지 운영되며, MSC 85에 중간 보고를 하고 MSC 86에 최종 논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기로 결정되었음

○ 아국은 동 사안과 관련하여, 해적 및 무장강도 관련 UN결의안 채택, Reccap ISC의 설립 및 아프리카 지역협정 추진 등 IMO 사무총장의 노력을 치하하고, 해적사고 발생 시 보다 적극적인 IMO의 역할을 요구하는 한편, 향후 소말리아 해역 해적문제에 재정적 지원과 함께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언급함

[ICC-IMB가 제안한 해적 및 무장강도 사건의 보고 의무화에 관한 사항]

□ **주요 결정사항**

○ 해적 및 무장강도 사건발생시 해당선박의 기국, 해사구조조정센터(MRCC) 및 IMB에 보고의무를 제안한 ICC-IMB의 의견에는 상당수의 국가가 동의하였으나, 해적 및 무장강도 사건의 조사 측면에서 정부의 지위에 있지 않은 IMB가 조사능력이 결여된 국가를 대신해서 조사자격을 부여받는 것에 대한 IMB의 지위와 관련하여 아국을 비롯한 터키, 말레이시아 등 몇몇 국가에서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발언함

의제 18 해상안전 및 보안에 관한 기술지원 하위 프로그램

[해상안전 및 보안에 관한 기술지원 하위 프로그램]

□ **주요 결정사항**

○ 해상운송의 안전, 보안 및 촉진에 관한 기술적 협력활동에 대한 정보에 대해 주목하였음

의제 19 협약의 이행 및 관련사항

[협약의 현황]

□ **주요 결정사항**

○ 협약 및 기타 강제 및 비강제 규정의 현황(2008.2.29 현재)에 대해 주목하였음

○ 또한 사무국에 협약 및 기타 강제 및 비강제 규정의 현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최신화된 개정본의 제출을 요청하였음

[건조 계약일]

□ **주요 결정사항**

○ 추가적인 선박의 건조를 위한 옵션을 포함한 건조계약에 적용되는 SOLAS 및 MARPOL 규칙의 정확한 정의를 위해, 위원회는 지침의 초안을 개발하였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옵션을 포함한 건조계약의 경우 옵션이 적용되는 선박들에 대하여 그러한 건조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조계약의 의사표시를 한다면 옵션을 포함한 선박들의 건조계약일로 소급하여 건조계약일을 정하였음

○ 그러나 많은 회원국에서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추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으며, 위원회는 FSI 16에서 상세 검토 후 관련사항을 MEPC 58에 보고하여 최종 결정하기로 하였음

의제 20 | 타 기구와의 관계

[타 기구와의 관계]

□ **주요 결정사항**

○ 위원회는 타 기구의 자문적 지위 부여에 대한 이사회의 결정사항에 주목하였음

- 국제도장및인쇄용잉크위원회(IPPIC)
- 국제동물복지기금(IFAW), 잠정적으로 2년 미만의 기간
- 국제유출통제기구(ISCO), 잠정적으로 2년 미만의 기간
- 국제해사보건연합(IMHA)의 지위를 잠정에서 완전한 자문 지위 부여
- 아이베로아메리칸해사법연구소(IIDM)의 자문적 지위 유지
- 국제장벽연합(IBA)의 자문적 지위 유지

○ 또한 위원회는 "2007년 12월 11일 제네바에서 열린 해상에서 구조된 피구조자의 처리에 관한 제 3차 유엔 상호 기관간 그룹 회의결과" 및 "할론의 장기간 이용가능성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제19차 몬트리올 의정서 당사국 회의 결과"에 대해 주목하였음

의제 21 | 위원회 지침의 적용

[위원회 지침의 적용]

□ **관련문서**

○ MSC 84/22(사무국) : 기구의 조직 및 작업방법에 대한 지침(MSC-MEPC.1/Circ.1)의 개정 초안 및 이사회, 총회에서의 관련 논의 결과

□ **주요 결정사항**

○ 상기사항을 반영한 위원회 지침을 승인(MSC-MEPC.1/Circ.2)하였음

의제 22 | 작업 계획

[BLG, DSC, FP, FSI, NAV, DE 및 SLF의 작업계획 및 차기 회의의 잠정 의제]

□ **주요 결정사항**

○ 각 전문위원회의 차기 작업 계획 및 잠정 의제가 결정됨

[각 전문위원회별 새로운 New work programme에 결정사항]

《SOLAS II-1/8-1, II-2/21 및 II-2/22 규칙의 통일적인 이행》

□ 주요 결정사항

○ MSC 82에서 채택되고 2010.7.1 발효 예정인 SOLAS II-1/8-1, II-2/21 및 II-2/22 규칙의 통일적인 이행을 위한 지침(Explanatory note)을 개발하기 위한 방화(FP) 전문위원회의 새로운 작업 계획으로 채택됨

《배타적 경제 수역(EEZ) 내의 인공섬, 설치 시설 및 구조물에 대한 500미터 이상의 안전지대 요청을 검토하기 위한 지침의 개발》

□ 주요 결정사항

○ EEZ 내 인공섬, 설치 시설 및 구조물에 대해 500미터 이상의 안전지대 설정 요청을 검토할 수 있는 지침 및 기준을 개발하기 위한, "배타적 경제 수역(EEZ) 내의 인공섬, 설치 시설 및 구조물에 대한 500미터 이상의 안전지대 요청을 검토하기 위한 지침의 개발" 의제가 2009년을 완료 시한으로 하여 NAV 전

문위원회의 작업 계획으로 채택됨

《방수복의 보온 요건》

□ 주요 결정사항

○ "방수복의 보온 성능" 시험 관련 표준시험장비(Reference Test Device, RTD) 시험법 도입을 위한 작업 계획이, 2010년을 완료 목표로 하여 DE 전문위원회의 새로운 작업 계획으로 채택됨

《구명설비 요건의 개정》

□ 주요 결정사항

○ "구명설비 시험에 관한 개정된 권고(Res. MSC.81(70))"의 MSC 80 및 82 개정(Res. MSC.200(80) 및 MSC.226(82)) 사항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를 위하여 2010년을 완료 목표로 하여 "구명설비 요건의 개정" 작업 계획이 DE 전문위원회의 새로운 작업 계획으로 채택됨

《"이중 선체 구조 탱커선의 안전 - 고정식 탄화수소 가스 탐지기" 관련 의제의 작업 범위 확장 제안》

□ 주요 결정사항

○ FP에서의 탱커선의 이중 선체 구역에 고정식 인화성 가스 탐지 장치 설치 강제화 관련 사항에 대해, 장치의 설치뿐 아니라 해당 구역에서 인화성 가스가 탐지되었을 때 가스의 불활성화 또는 폭발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도 같이 논의되도록 작업 범위가 확장됨

《여객선에서 운용되는 부속선(Tender)》

□ 주요 결정사항

○ 부속선에 대한 규정을 비강제 규정으로서 개발하고, 규정의 개발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각 전문위원회에 새로운 작업 계획이 채택되었음

- NAV : 항해 장비
- COMSAR : 통신 장비
- DE : 구명 설비, 추진장치, 본선에서의 탑재 장소 및 여객 승선 관련 사항
- FP : 화재탐지 및 소화
- SLF : 건현 및 복원성
- STW : 선원 및 감독

《해상에서 구조된 인명》

□ 주요 결정사항

○ 해상에서 구조된 인명의 처우와 관련하여, "인명구조 책임이 있는 국가 및 선장을 위한 강제화된 지침의 개발"에 대한 사항이 COMSAR의 새로운 작업 계획으로 채택되었음

《여객선 선저 검사 요건의 대체 이행 사항》

□ 주요 결정사항

○ 여객선 선저 검사 요건의 대체 이행 사항에 대한 정확한 기술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DE 전문위원회에 새로운 작업 계획으로 채택되었으며, 또한 FSI 전문위원회에 이와 관련하여 "HSSC에 따른 검사 지침(Res. A.997(25))"의 개정을 요청하였음

《포장 형태로 운송되는 위험물에 관한 서류 작성 요건》

□ 주요 결정사항

○ 위험물 운송 서류와 관련하여 SOLAS VII/4 규칙 및 관련 IMDG 코드 적용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DSC의 새로운 작업 계획으로 채택됨

《로로 여객선의 손상 복원성 요건》

□ 주요 결정사항

○ 선박의 복원성에 관한 SOLAS II-1 전면 개정사항과 스톡홀름 협정 요건의 적용 관련, 두 규정의 적용 불일치에 관한 논의를 위해 SLF 전문위원회의 새로운 작업 계획으로 채택됨

《인정 기관(Recognized Organizations, RO)에 대한 코드의 개발》

□ 주요 결정사항

○ 흩어져 있는 RO에 대한 요건을 하나의 강제규정으로 통합하고, RO가 해당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심사할 수 있는 체계 및 절차를 규정한 "인정 기관(Recognized Organizations,

RO)에 대한 코드" 개발을 위해 FSI의 새로운 작업 계획으로 채택됨

《본선 비상 대응 계획의 이행을 위한 Model Procedure의 개발 제안》

□ 주요 결정사항

○ "선상 비상조치의 실행을 위한 절차의 모델 개발"대한 STW의 새로운 작업 계획으로 채택됨

《컨테이너 점검 프로그램(CIP)의 효용성에 대한 검토》

□ 주요 결정사항

○ CIP의 효율성 입증을 위한 "컨테이너 점검 프로그램(CIP)의 효용성에 대한 검토"가 DSC의 새로운 작업 계획으로 채택됨

《VDR 시스템 설계》

□ 주요 결정사항

○ VDR과 관련하여 캡슐 수색 및 회수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고 위험성을 없애기 위한 부양식 캡슐 사용 검토에 대한 사항이 NAV 전문위원회의 새로운 작업 계획 "VDR 성능 기준의 개정"에 포함됨

○ 또 다른 이집트의 작업 계획 제안(MSC 84/22/17 및 MSC 84/22/19)은 채택되지 못하였음

《1993 토레몰리노스 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협정서 초안의 준비》

□ 주요 결정사항

○ 1993 어선 안전을 위한 토레몰리노스 협약 의정서의 조기 발효 방안 검토를 위한 SLF의 새로운 작업 계획으로 채택됨

《SOLAS 강제 요건 제정을 위한 선박의 최소 승무정원 산정 원리 검토》

□ 주요 결정사항

○ 선원의 안전한 배승과 관련하여 "선박의 최소 승무 정원 산정" 관련 사항을 SOLAS V/14 규칙 개정을 통해 강제화하는 STW의 새로운 작업 계획이 채택됨

의제 23 | 기타 사항

[기타 사항]

□ **주요 결정사항**

《GISIS 현황》

○ GISIS는 2005년 중순, 그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현재 8개 모듈(해상 보안, 해양 사고, 인정 기관(RO), 항만 수용 시설, 현상 검사(CAS), 해양오염방지설비, 회원국 연락처 및 선박 정보)이 운영 중임

《2004 MARPOL 개정에 따른 AIS 프로그램의 최신화》

○ 2004 MARPOL 개정에 따른 AIS 프로그램의 최신화와 관련된 사항을 NAV에서 검토하여 줄것을 요청하였음

《야간 견시 시의 감광성 렌즈 착용 및 암흑 적응》

○ "야간 견시 시의 감광성 렌즈 착용 및 암흑 적응"과 관련한 MSC..../Circ.... 발행을 승인함

《선박으로부터의 소음과 해상 동물》

○ 위원회에서는 해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해상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연구에 IMO 회원국 모두 또는 회원국 내 관심 있는 기관의 참여를 요청하였음

《계선 시의 활용 지침》

○ 선박 계선 시 지침을 NAV 및 DE 전문위원회에 참고용으로 전달하였음

《기타 사항》

○ 소형 선박에서의 당직, 산적화물선에 대한 해양사고 보고서에 대한 내용에 주목하였음